2026년 11월 26일

Kiwoom
Digital Issue Focu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디지털자산/원자재 심수빈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 금융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Summary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발표. 디지털자산업의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과 국내 ICO 허용 등을 통해 기존 거래소 중심의 디지털자산 산업이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관련 규제 구체화.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 확대 및 국내외 발행사와 기존 금융회사 간 협업 가능성에 주목
-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범위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표

11월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2025년 6월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 법률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계류 중에 있고, 정부안 발표는 수차례 연기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안이 발표된 만큼 추후 입법 과정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한 대표 발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그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던 ①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②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③현행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 ④디지털자산업의 기능별 세분화 및 인허가 체계를 발표, ⑤디지털자산 발행과 판매(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및 유통 공시 기준 제시, ⑥기존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보완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가상자산 규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 재산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사업자의 영업행위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키움증권

국내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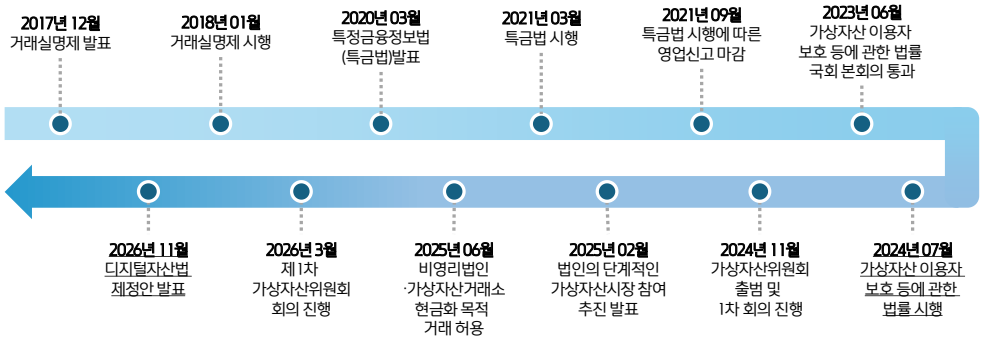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디지털자산 산업	- 디지털자산 정의 명확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 매매·중개·보관·운용업으로 업권 세분화 - 기능별 인가·등록제 및 업무단위 추가(Add-on) 방식 도입 - 금융회사에 준하는 영업행위·건전성 규제 마련 - 혁신 사업자 진입 유도 및 제도적 기반 정비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지급토큰 정의 및 발행업자 인가제 도입 - 제도 초기 은행권 과반 지분 보유 컨소시엄 중심 발행 허용 - 충분한 준비자산 보유 및 상환권 보장 - 외국 발행업자 및 외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관리체계 구축
디지털자산 시장	- 공시를 전제로 국내 ICO 허용 - 거래소(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 지배구조 개편 - 매매체결·거래지원·이상거래 감시 관련 업무규정 마련 - 디지털자산 백서 및 거래지원보고서 공시 - 발행량 변경 등 중요정보 수시공시 및 부실공시 책임 부과
이용자보호	-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이용자 재산 보호 및 상시 점검 체계 강화 - 전산 안전성 확보 기준 신설과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 강화 - 불공정거래 규제 범위 확대 및 제재수단 추가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에 가져올 변화는?

먼저 이번 제정안 시행 시 기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 규제, 거래소 지분 규제, 국내 ICO 허용을 들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현재의 거래소 중심의 디지털자산 산업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운용업으로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취급하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업무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세분화를 통해 개별 영업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제시했다.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에 대한 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인가를 모두 취득해야 하며, 이외에도 자기자본, 시장운영 능력,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도 매매·중개·보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권 세분화 자체가 기존 거래소의 사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배구조 및 시장운영 관련 규제는 기존 거래소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내 대체거래소(ATS)의 기준을 차용한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주식소유 한도는 20%로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한 예외조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에 준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매매체결, 거래지원, 이상거래 감시 등 기존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해 왔던 시장운영 기능도 공적 규제체계로 편입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 및 판매(ICO)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디지털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경우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사업 영역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발행공시 주체로 취득권유 과정을 대행하는 디지털자산 매매업자와 중개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발행 주선과 유통시장 운영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구성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업 구분 및 업종별 주요 규율 내용

구분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운용업
정의	–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 매매 및 교환	–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 매매, 교환 및 중개	–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또는 통제수단 보관 및 관리	– 이용자 특성에 맞춘 운용 일임 및 거래자문
주요사업	– 자기매매, OTC, 유동성 공급, 대여	– 위탁매매, OTC 중개	– 커스터디, 스테이킹	– 투자일임, 투자자문
진입규제	– 인가	– 인가	– 인가	– 등록
최소 자기자본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5억원
스테이블코인 전용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별도 구분 미제시
주요 영업행위 규제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대여 대상 및 기준 마련	– 최선집행의무, 자기계약 금지, 이용자 예치금 분리	– 선관주의 의무, 이용자 재산 분리 보관, 스테이킹 위험고지 및 사전동의	– 적합성 평가,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금전 등 대여 금지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매매·중개·보관업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 금액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 관련 주요 규제

구분	세부 항목	주요 규제 내용
진입규제	지정 요건	– 디지털자산매매업·중개업·보관업 인가를 모두 취득한 사업자 중 충분한 자기자본 및 시장운영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를 금융위가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로 지정
	자기자본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자기자본 요건 충족
	시장운영능력	– 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거래지원·시장감시 등 업무 기준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소유분산	주식소유 제한	– 자본시장 내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주식소유 제한 도입. 원칙적으로 20%까지 소유 가능
	예외 요건	– 금융회사 등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34%까지 주식소유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서 예외 허용 예정
	위반 시 조치	– 주식소유 제한 규정 위반 시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적용 유예	– 기존 및 신규 거래소 모두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소유분산 기준 적용 유예
	중소형 거래소 특례	– 시장점유율 기준 중소형 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추가 유예 허용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감사 및 내부통제	–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임면 등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에 준하는 지배구조 체계 확립
시장운영	업무규정 마련	– 기존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매매체결, 거래지원, 이상거래 감시 등 거래소의 주요 기능을 공적 규제체계에 편입하고 주요 내용을 법령에서 직접 규율
	매매체결 업무규정	– 매매수탁 및 주문처리 방법, 매매정지 절차, 매매체결 및 결제 등에 관한 기준 마련
	거래지원 업무규정	– 거래지원(상장) 기준, 관련 정보의 공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및 중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이상거래 감시 업무규정	– 시장감시 및 심리 기준과 방법,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마련
감독	업무규정 변경	– 업무규정 변경 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업무규정 변경요구권	– 금융위에 거래소의 업무규정 변경요구권을 부여하여 시장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 확보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단계별 공시 규제

구분	발행공시	유통공시
규제 대상	불특정 다수 대상 디지털자산 취득권유	디지털자산플랫폼 내 거래지원
공시 주체	발행인, 개발자, 프로젝트 운영자 등 취득권유를 조력 및 대행하는 매매·중개업자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
공시 서류	디지털자산 백서 및 설명서	거래지원보고서 및 설명서
주요 기재 사항	취득권유자, 자금 사용처, 발행량, 프로젝트, 투자위험 등	발행인, 발행량, 프로젝트, 투자위험 등 백서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
공시 절차	금융위 신고 및 수리 → 공시 → 숙의기간 경과 후 취득권유	거래지원 심사 → 금융위 제출 및 공시 → 거래지원
공시 시점	취득권유 이전(숙의기간 예: 7일)	거래지원 이전(예: 7일)
기타	공시서류 심사 및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한 정정요구	기존에 공시된 백서를 갱신하여 거래지원보고서로 갈음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위는 이번 디지털자산업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기존 거래소 중심의 국내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제시한 해외 영업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 대상 장외거래 매매,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정안 시행을 통해 기관 투자자 대상 사업으로 확장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거래 허용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함께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디지털자산업별 해외 영업 형태

구분	금융위가 제시한 해외 영업 형태
매매업	- (교환소)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자산과 다른 디지털자산의 교환을 사업자에게 요청 → 사업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교환가격 제시하고 이용자 수락시 거래 - (유동성 공급자) 英 Wintermute社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20여개 이상 글로벌 거래소에 호가 제시 등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
보관업	- (Prime Brokerage Service)해외 주요 거래소(Coinbase Prime 등)는 기관이용자 대상으로 '매매처리-커스터디-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연결고리

이번 제정안에는 그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도 포함되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주체, 인가 및 감독 권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번 제정안에는 그간 논의되어 온 규제 방향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이 허용될 예정이나, 핀테크 및 기술기업 등도 해당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제도 안착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구성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발행업자에 대한 인가 및 감독 권한의 경우 금융위에 부여하되,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발행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발행잔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보유 및 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등 글로벌 주요국과 유사한 규율체계를 제시했다.

기존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쟁점과 정부안 비교

구분	주요 쟁점	정부안 반영 내용
발행주체	– 은행+핀테크 컨소시엄 방식이 유력하나 은행 50%+1주(51%룰) 여부가 최대 쟁점	– 은행권 과반 지분 보유 컨소시엄부터 발행 허용. 핀테크·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참여 가능. 주주구성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발행인가 및 감독	– 금융위 인가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한은의 참여·견제 장치 필요성 논의	– 금융위 인가제 도입.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발행업자에 대한 한은의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 부여 – 금융위·재경부·한은 협의체 마련
준비자산	– 현금·예금·단기 국공채 등 고유동성 안전자산 100% 수준 보유 방향	– 발행잔액의 100% 이상 보유 – 동일 통화 표시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
상환	– 보유자의 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 준비자산 분리보관	– 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 준비자산 예치·신탁 및 도산절연
이자·리워드 지급	–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대체·머니마켓화 방지를 위해 제한하는 방향이 강함	– 발행업자 등의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 USDT·USDC 등 국내 유통 시 국내 규제체계 편입 필요성에는 공감	– 해외 발행업자의 국내 영업소 설치 및 등록,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고제 도입. – 미신고 토큰의 취급 제한
거래소와 발행사 관계	– 발행·유통의 이해상충 방지 필요.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거나 계열 발행사를 밀어주는 문제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의 거래 제한 –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지급토큰(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규제

구분	세부 항목	주요 규제 내용
정의	디지털지급토큰	- 하나의 통화가치에 준거하여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
발행업자 진입규제	국내 발행업자	- 금융회사에 준하는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및 임원 자격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심사
	주주구성	-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규제 준수 및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 허용. 단, 핀테크·기술기업 등의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인가요건 조정	- 컨소시엄 인가 심사 시 안정성뿐만 아니라 혁신성도 고려. 향후 제도 안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구성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외국 발행업자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갖춘 본국에서 인가받은 발행업자는 국내 지점 설립 및 금융위 등록 후 발행·상환 가능 - 본국 감독체계, 국내 거주 대표자 선임, 영업기금 국내 보유 및 준비자산 운용·관리계약 등 확인
발행 및 유통	발행계획 승인	- 발행량 및 발행한도, 준비자산 관리, 상환업무 등에 관한 발행계획서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후 발행 가능
	유통 및 거래지원	- 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적법하게 신고된 디지털지급토큰에 한해 디지털자산업자의 거래지원·매매·중개·보관 등 취급 허용
	외국 디지털지급토큰	- 본국의 신고·승인 등을 거쳐 이미 발행된 외국 디지털지급토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에 신고한 후 국내 유통 허용
	이자 지급 금지	- 예금 및 증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발행업자 등의 디지털지급토큰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준비자산 관리	준비자산 보유	-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하도록 의무화
	준비자산 구성	- 디지털지급토큰이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
	도산절연	- 준비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상계 금지 등을 통해 발행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준비자산 보호
	외국 발행업자 준비자산	- 글로벌 규제 논의 등을 고려하여 **준비자산의 일부를 국내 은행에 보관·운용**하도록 규율할 방침
상환	발행 및 상환가격	- 금전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하고, 보유자의 발행업자에 대한 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
	상환업무 대행	- 원활한 상환업무 수행을 위해 발행업자가 상환업무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기준	- 이용자 수, 발행금액(1조원 이상)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지급토큰을 금융위가 지정
	추가 건전성 규제	- 자기자본 추가 적립, 준비자산 유동성 관리 강화, 위험 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등 강화된 규제 적용
	한국은행 권한	-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발행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 마련
정책 협의체계	위원회 구성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로 구성된 디지털지급토큰 관련 위원회 설치
	주요 협의 사항	- 통화·외환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지급토큰 총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등 협의
공시 및 감독	공시 의무	- 발행 시 발행계획 공시, 준비자산 현황 및 상환청구 방법 상시 공시
	회계감사 및 보고	- 준비자산에 대한 매월 회계감사 및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검사 및 제재	- 금융위의 검사권,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 및 제재 근거 마련
	조치명령권	- 발행·상환·거래지원 중단조치 및 예비적 수단으로 금융위의 포괄적 조치명령권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처럼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규제 방향이 구체화된 만큼, 추후에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활용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토큰증권 등 금융시장의 결제 인프라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발행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유통 및 활용처 확대 과정에서는 금융투자업자 등 비은행기관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더불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들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외국 발행업자가 국내에서 발행 및 상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위한 신고 절차도 마련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매매, 중개 및 보관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 발행업자의 준비자산 일부를 국내 은행에 보관하고 운용하도록 규율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향후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내 규제 대응 방안이나 국내 금융기관과의 협업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 시작, 그 다음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금융회사들의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금가분리와 관련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2026년 중 은행 및 증권사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어졌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성 검토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면서,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수탁과 관련한 회계 지침 폐지, 은행의 디지털자산 보관 허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디지털자산업의 직접적인 참여 가능 여부나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금가분리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된 바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경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기초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수탁 인프라 관련 규율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실제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범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이 실제 국내 금융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사례를 고려했을 때 법안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6 말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법 시행은 2027년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규제의 세부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인 만큼, 법률 제정 이후에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범위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사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법 시행과 함께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취급이나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비 시점에 따라 국내외 금융회사 간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경험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추가 규제 정비 필요 사항

구분	주요 규제 정비 과제	이번 제정안 내 관련 내용	추가 제도 정비 시 기대되는 변화
투자 주체	-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 구체적인 시장 참여 확대 방안 미제시	- 신규 투자 주체 및 자금 유입
사업 주체	- 금가분리 및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영위	- 발행 컨소시엄 및 거래소 지분 참여 관련 내용 포함 - 직접적인 업무 영위 가능 여부 미언급	-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투자 상품	- 가상자산 현물 ETF 및 관련 금융투자상품	- 구체적인 도입 방안 미제시	- 기존 금융시장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 범위 확대
거래 방식	- 마진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 디지털자산 대여 관련 규율 마련 예정. 마진 및 파생상품 거래 허용 방안 미제시	- 투자전략 및 거래 방식 다양화
거래 인프라	- 실명계좌 발급 및 은행 제휴 구조	- 중개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관리 규정 마련 - 실명계좌 제도 개선방안 미제시	-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이용자 접근성 개선 가능
지급결제	-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및 외환거래 활용	- 발행·유통·상환 규율체계 마련	-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및 국경 간 송금 확대
금융 인프라	-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의 연계	- 구체적인 결제 연계 방안 미제시	- 증권의 발행·유통·결제 과정 내 분산원장 활용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